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 결

사 건 2024가합72450 손해배상(지)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연순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신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양영화
변 론 종 결 2026. 5. 29.
판 결 선 고 2026. 7.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6 기재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9,488,116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589,488,116원에 대하여는 2025. 12. 24.부터 2026.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별지1, 2 기재 각 표장을 대관서비스업(공간·시설의 대관 및 그 알선·중개를 포함)의 제공 또는 그 광고·홍보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피고들의 의뢰·지시에 따라 제작·게시·배포되는 다음 각 매체에 사용하거나 위 각 표장을 사용하여 대관서비스를 광고·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광고물(전단, 리플릿, 브로슈어, 배너, 현수막 등 인쇄물 및 이에 준하는 홍보물 포함)
 - 나. 가격표·요금표·정가표(온·오프라인 표시 포함)
 - 다. 거래서류(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명함 및 이에 준하는 서류 포함)
 - 라. 간판·표찰·실내외 안내물 및 이에 준하는 표지물
 - 마. 인터넷 게시물(피고들의 홈페이지, 중개플랫폼 내 소개·예약·상품페이지, 피고들 운영 SNS 계정 게시물, 포털 노출 페이지 중 피고들이 관리 가능한 영역을 포함)
3. 피고들은 별지3 기재 각 원고의 사진을 피고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피고들의 의뢰·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매체에서 복제, 배포, 전송(인터넷 게시·게재 포함) 또



는 공중송신하거나,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들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도급, 위탁, 대행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위 행위를 하도록 표장·사진 파일, 게시물, 이미지·캡처 등 자료를 제공하거나 게시를 요청·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들은 별지1, 2 기재 각 표장 및 별지3 기재 각 사진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상 시설·서비스가 피고들의 시설·서비스이거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휴·승계·공동운영 기타 경제적·조직적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피고들은 피고들이 운영·관리하거나 피고들의 의뢰·지시에 따라 게시·배포되는 매체를 통하여, 별지4, 5 기재와 같이 원고의 영업연혁 및 성과(원고가 '인쇄공장을 개조하여 인더스트리얼 무드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취지, 개장 연도·운영기간, 브랜드 스토리 등)를 피고들의 영업연혁 또는 성과인 것처럼 표시·광고·게시(복제·배포·전송·공중송신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별지4, 5 기재 내용이 게시된 게시물·페이지에서 별지4, 5 기재 내용을 삭제 또는 비노출 처리하여야 하고, 삭제 또는 비노출 처리 후 별지4, 5 기재 내용(문구의 일부 변경, 표현의 치환, 도치 등으로 실질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다시 표시·광고·게시(복제·배포·전송·공중송신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스튜디오 렌탈 및 사진촬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아래 나.항 기재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광고대행 및 종합광고물 제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일자/ E일자/ F

○ 표장:



○ 지정상품: 제41류(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튜디오서비스 제공업, 멀티미디어프레젠테이션 제작용 레코딩 스튜디오 및 필름 스튜디오 서비스업, 연예목적의 패션쇼 개최업, 연예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파티 계획업, 사진촬영업)

다.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영업

1) 원고¹⁾는 2016. 10. 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0. 17.부터 2021.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스튜디오 렌탈업 등 영업을 하였다.

2) 그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20. 1. 3. I이 2019.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최초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 J이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후 J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는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J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2. 25.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가 2021. 11. 3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I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주식회사 K가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며, 원고는 I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10. 5. '원고는 K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K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I은 원고에게 137,01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8375호(본소), 2021가합108382호(반소)]. 이에 원고와 I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12. 'I이 원고에게 82,20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738(본소), 2022나2041745(반소)], 위 항소심 판결은 I과 원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23. 9. 12.경 K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회사의 영업

피고 회사는 2023. 11. 17. K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2023. 12. 1. 부터 2024. 7. 31.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단기임대업 등 영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6, 19, 22, 39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및 상표 등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L', 'M'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스튜디오제공(단기대관)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들은 'L', 'M'을 사용하여 스튜디오제공(단기대관) 영업을 하였는바, 이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다. 별지3 기재 각 사진은 원고의 창작성이 인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물인 위 사진들을 피고들의 영업을 위한 카달로그에 그대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6 기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1항 기재 부분은 별지1, 2 기재 각 표장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매체를 '이에 준하는 홍보물', '이에 준하는 서류', '이에 준하는 표지물', '인터넷 게시물'로 특정하고 있는데, 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체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2항 기재 부분은 별지3 기재 각 원고의 사진의 사용 금지를 구하는 매체를 '피고들이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피고들의 의뢰·지시에 따라 사용되는 매체'로 특정하고 있는데, 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체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3항 기재 부분 중 청구취지 제3항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표장·사진 파일, 게시물, 이미지·캡처 등 자료'의 사용 금지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금지의 대상이 되는 자료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4항 기재 부분은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5항 기재 부분은 '피고들이 운영·관리하거나 피고들의 의뢰·지시에 따라 게시·배포되는 매체'를 통하여 '원고의 영업연혁 및 성과'를 '피고들의 영업연혁 또는 성과인 것처럼 표시·광고·게시'의 금지를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를 구하는 매체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지의 대상이 되는 표현 및 행위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소 중 별지6 제6항 기재 부분 중 '별지4, 5 기재 내용이 게시된 게시물·페이지'에서의 삭제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4, 5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이 게시된 게시물·페이지가 특정되지 않아 삭제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삭제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삭제 또는 비노출 처리 후 '별지4, 5 기재 내용(문구의 일부 변경, 표현의 치환, 도치 등으로 실질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차 표시·광고·게시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 또한 삭제·비노출 처리될 게시물·페이지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재차 표시·광고 등의 금지를 구하는 게시물·페이지 등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여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금지청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6 기재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모



두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포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포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내지 15, 17, 18, 23 내지 33, 41, 42, 45호증, 을 제2 내지 14, 19 내지 21, 30, 31, 36, 39,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N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건물, 즉 장소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행위 중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2,



14, 15호증)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발행된 것으로 공급자가 피고 회사가 아닌 K에 불과하고, O의 제안서와 인스타그램 광고(갑 제17, 18호증)는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단기임차하여 사용한 O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관련기사(갑 제13, 23 내지 28, 32호증)는 해당 언론사가 이 사건 건물에서 개최된 행사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 전자세금계산서, O 제안서, 관련기사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피고들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2023. 11. 14.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한 사진(갑 제2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L'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2. 9.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남아있던 'L' 기재를 삭제하였는바(을 제20호증의1), 이 사건 건물에 'L'이라는 기재가 남아 있었던 것은 원고가 2023. 9. 12. 이 사건 건물을 K에 인도할 당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당시 남아 있던 'P STUDIOS'라고 기재된 주차표시판(갑 제31호증) 또한 피고 회사의 상호 'B'가 기재된 주차표시판(을 제6호증)으로 교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부착된 벽보(갑 제30호증)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주차표시판, 벽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K로부터 임차할 당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는 이 사건 건물을 'P', 'M' 등으로 지칭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



약을 중개하였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티맵 등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도 이 사건 건물이 'L'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에도 'L', 'M'은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23. 1.경부터 2023. 4.경까지 여러 업체들과 대관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이 'Q(구 M)', 'L'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용도로 'L', 'M'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 회사의 카달로그(갑 제11호증)에는 'L'이라는 표장이 사용되어 있으나, 위 카달로그 처음과 마지막에는 피고 회사를 나타내는 표장인 와 이 사용되어 있는데, 카달로그의 전체적인 구성과 그 내용을 볼 때, 'L'은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라기 보다는 '장소'인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들은 2024. 4.경 K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원고는 2024. 1.경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24. 1.경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은 K이므로 그 무렵 피고들이 원고의 문제 제기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L', 'M'에서 'R', 'S'으로 변경한 후, 피고 회사의 카달로그의 'L' 부분을 'R'으로 변경하였고,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티맵 등 여러 온라인 서비스에도 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R'으로 변경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24. 4. 5. 공간 중개 플랫폼 사이트인 'N'에 이 사건 건물을



명칭을 'M'로 하여 최초로 등록하는데, 이 사건 건물 명칭을 위와 같이 변경한 후에도 N 사이트에 'M'이라는 기재가 일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M'을 'R(S)'으로 변경해달라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재가 미처 수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M'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아) 원고도 원고의 등록상표가 'P'임에도 이 사건 건물의 도로명 주소인 '서울 성동구 H'에서 'T'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L'로 지칭하며 영업을 하여 왔는바, 원고도 위 'L' 표장을 장소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 게다가 원고가 사용금지를 구하는 별지2 기재 표장 중 순번 8 내지 14는 피고가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



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6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22. 6.경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 등 인터넷을 통하여 'L', 'M' 표장을 이용하여 스튜디오 제공업을 광고한 사실, 위 기간동안 'L', 'M' 표장을 사용한 이 사건 건물에서 수차례 크고 작은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러한 행사 내용이 언론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L', 'M' 표장이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营业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L', 'M'은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 널리 사용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건물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등 참조).

2) 관련법리

살피건대, 별지3 기재 각 사진은 이 사건 건물의 공간을 촬영한 사진 또는 이 사건 건물에서 개최된 행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촬영하여 원고의 카달로그(갑 제21호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이 원고의 사진기술에 의하여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피사체인 이 사건 건물의 공간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원고의 사진기술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원고의 어떤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6 기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희찬

판사 김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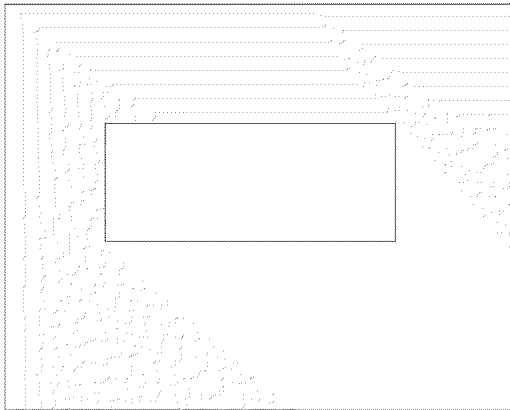
판사 장 영



별지1

원고의 등록상표 목록

1. 상표등록번호 : F
2. 지정상품 : 제41류 사진촬영스튜디오제공업, 오디오 또는 비디오 스튜디오서비스제공업, 멀티미디어프레젠테이션 제작용 레코딩 스튜디오 및 필름 스튜디오 서비스업, 연예목적의 패션쇼, 연애 목적의 전시회 조직업, 파티 계획업, 사진촬영업
3. 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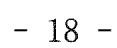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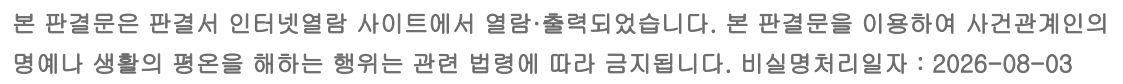


별지2

원고의 사용표장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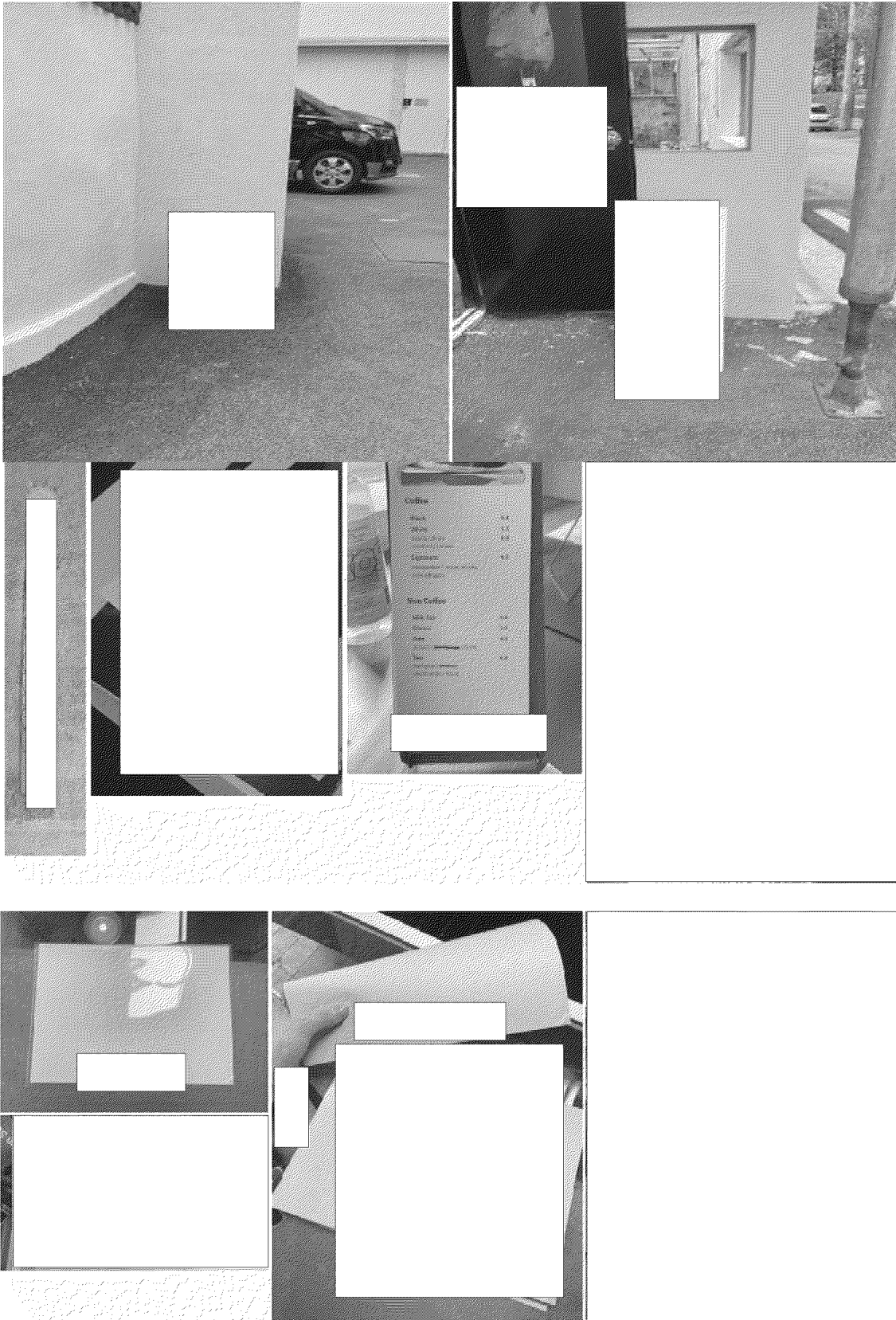
1. L
2. M
3. L
4. M
5. U
6. V
7. W
8. X
9. Y
10. Z
11. AA
12. AB
13. AC
14. A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ESTIMATE 경매서
---	--

Menu

Menu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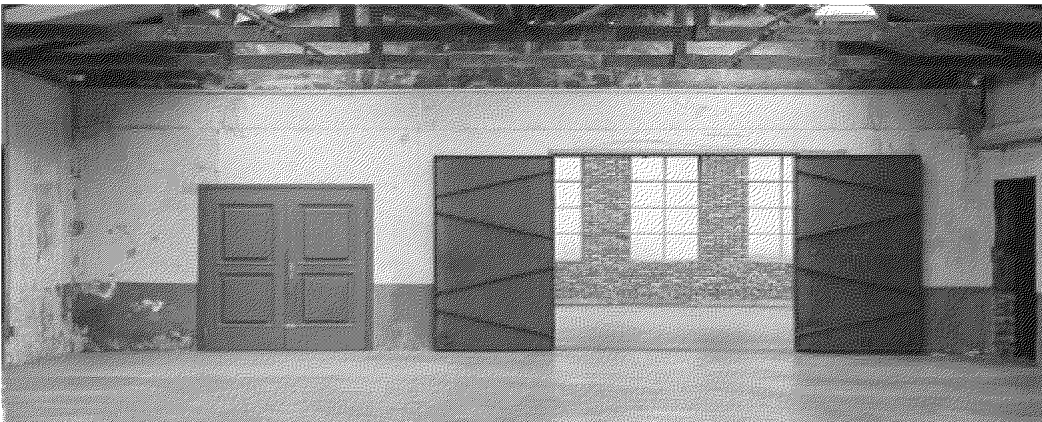
별지3

원고의 저작물(사진) 목록

1.



2.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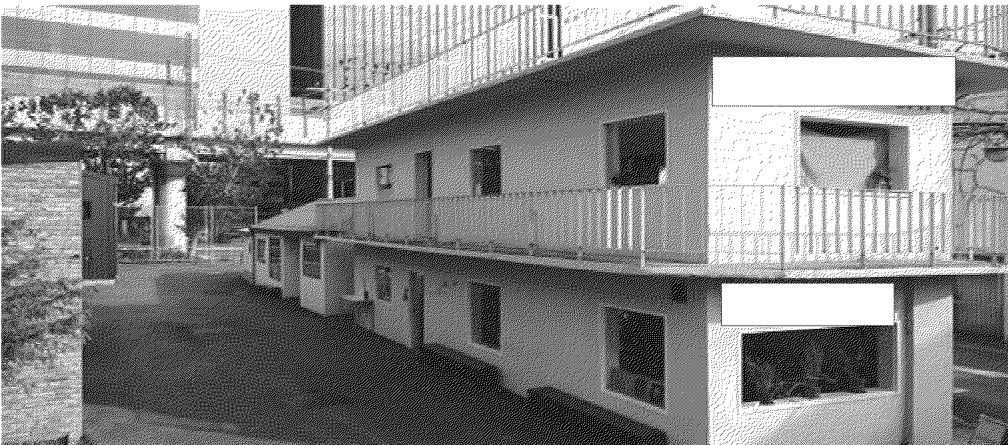
4.



5.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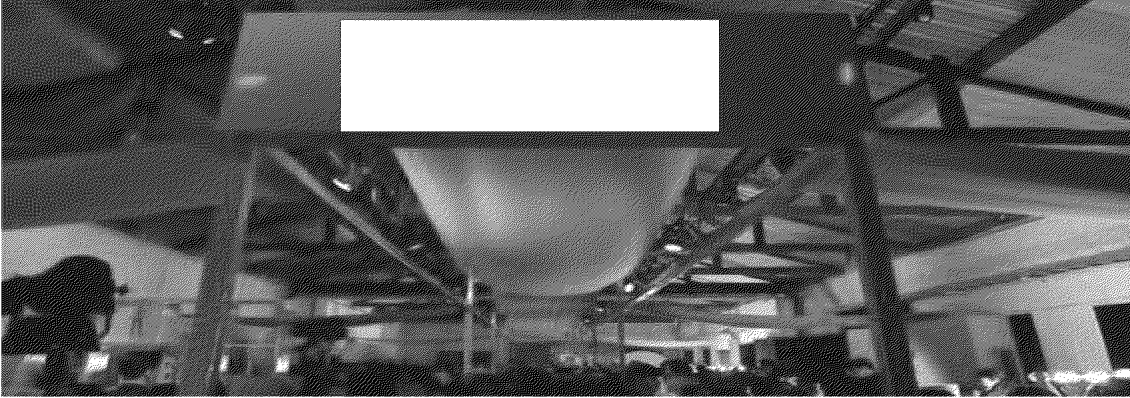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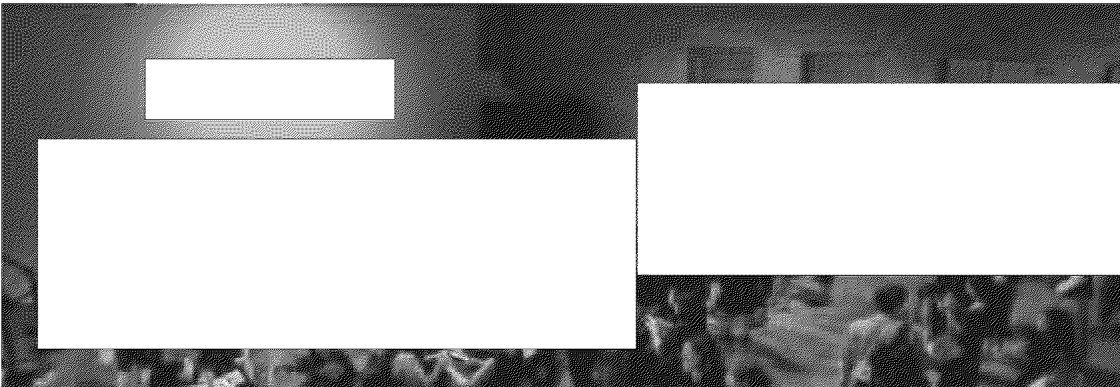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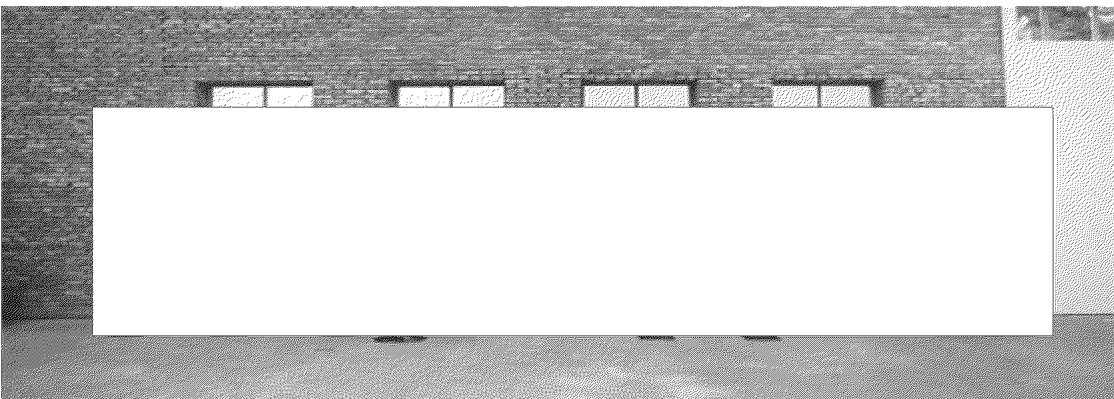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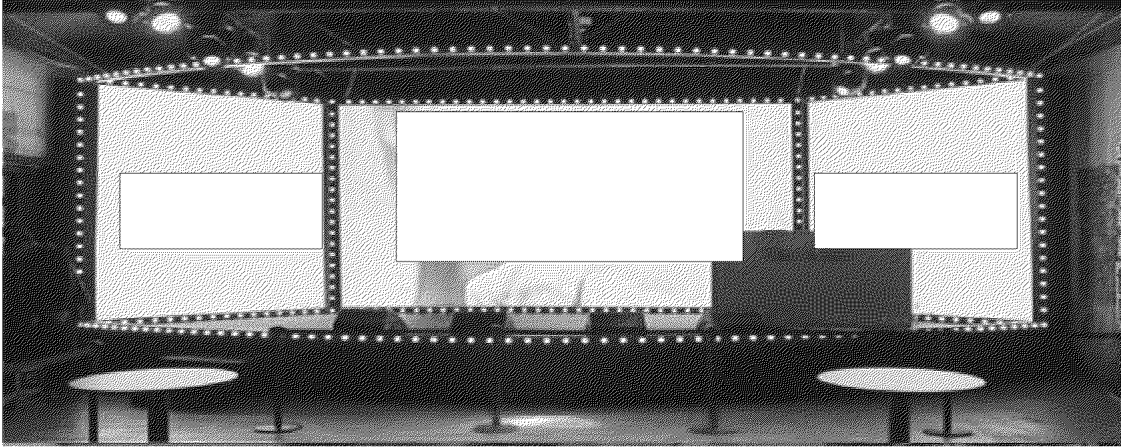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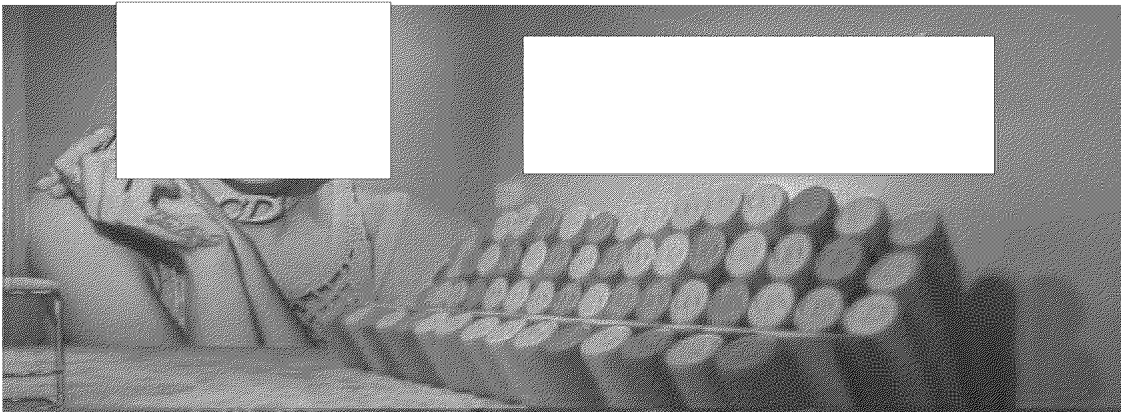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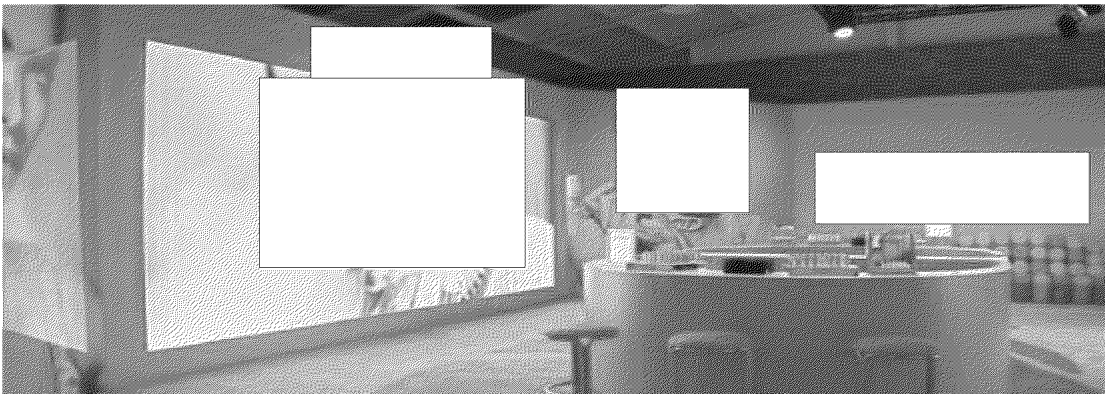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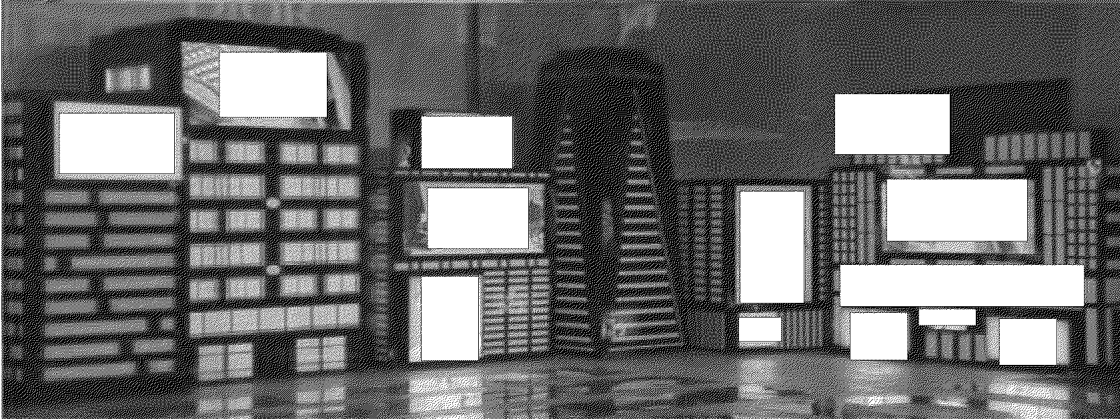
1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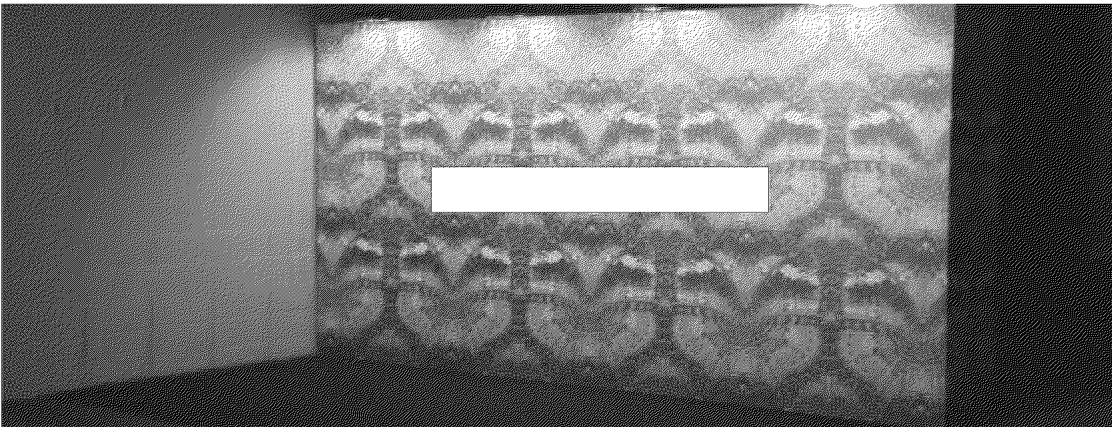
16.



17.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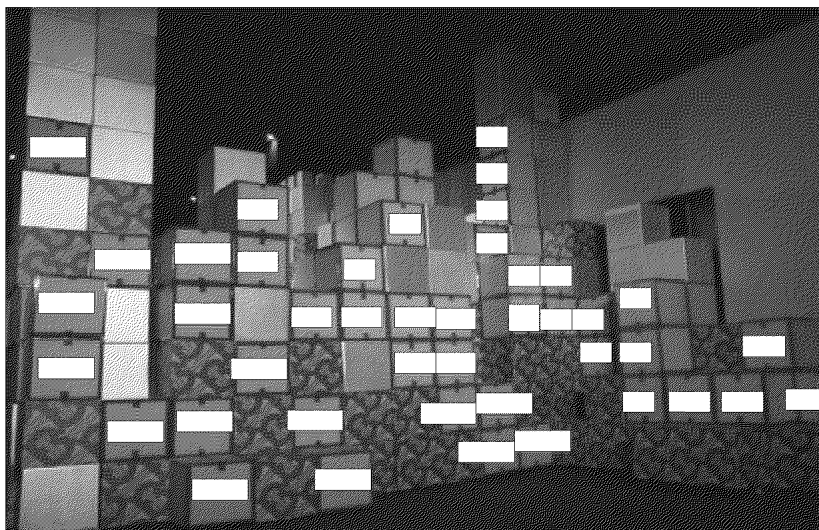
19.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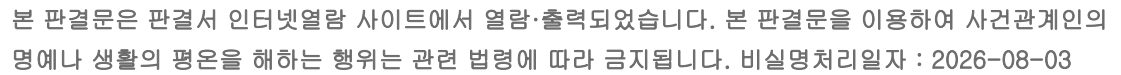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22.





홍보문구 목록

- 2) 위 홍보문구 출처 URL : N 상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
/캡처일자 : 2026. 5. 20./캡처본(이하)

- 30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 참고 :

원고가 기존에 사용해 온 광고문 구 ▶	원고의 인쇄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원고는 공장 건물 고유의 프레임과 텍스처가 그대로 보존되어있는 인더스트리얼 무드의 렌탈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는 총 400평의 규모로 화보, 광고촬영 뿐 아니라 브랜드 파티 및 공연, 패션쇼 등 다양한 촬영과 행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공간 외에 카페와 북스토어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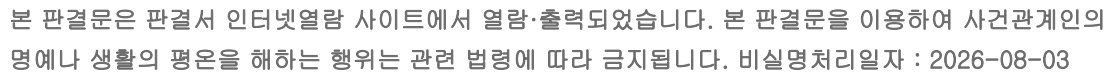


별지5

원고의 영업이력 도용 및 이 사건 표장 무단사용 목록³⁾

1	2017-06-27- [] 론칭 [] 푸드 사장이 27일 서울 [] [] 에서 열린 ' [] ' 론칭 행사장에서 기자 와 만나 이같이 밝히며 프리미엄 사료 시장을 선 도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출처: []	2	2017. 7. 1. - " [] 컬렉션 런칭 행사" [] 이 올해 새롭게 재정비한 [] [] 컬렉션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여 6월 29일 서울 [] 스튜디오에서 성 대한 런칭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 []
3	2017-07-03- ' [] ' 17.07.01~02(2일간) [] 센터가 미술 작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작가 [] 개설지원 사업의 하 나로 지난 1~2일 서울 [] 에서 ' [] [] '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출처: []	4	2017-07-09- [] 17.08.04~06(3일간) 매주 [] (이하 [])의 신개념 팝업스토어 ' [] '가 지난 7일 마포구 [] 에 위치한 [] 에서 열렸 다. 8월 4일부터 6일은 [] (성동구 []) 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
5	2017.9.19- [] 17.9.19 19일 오전 서울 [] 스튜디오에서 [] [] 사장(왼쪽)과 모델이 7인승 대형 패밀리 SUV ' [] '를 선보이 고 있다. '플래티넘' 단일 모델로 출시되는 [] [] 는 핸즈프리 파워 리프트 게이트, EZ 플렉스 시팅 시스템 및 래치&글라이드 기능을 탑재해 한 층 업그레이드됐다. 출처: []	6	2017-11-17- ' [] 봄·여름 여성 컬렉 션 프리뷰 및 파티 17.11.14 170년 역사의 스페인 가죽 명가(名家)로 꼽히는 [] '를 공식 수입하는 [] [] 부문은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 [] 스튜디오에서 ' [] [] 봄·여름 여성 컬렉션 프리뷰 및 파티(사진) '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출처: []
7	2017-11-22- ' [] ' 리론칭 컨벤션 기념 행사 17.11.22 배우 [] 가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 [] 에서 열린 ' [] ' 리론칭 컨벤션 기 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8	2017.12.05 - ' [] ' 12.08~09 (2일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 [] [] '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 [] 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콘텐츠 가 먹히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트업들의 생생한 이 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연 사의 특별강연과 국내 대표 콘텐츠 스타트업들의 라이브 토크,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출처: []

3) 피고들은 자신의 영업시기를 2023. 12. 1.이고, 자신들의 상호(R)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24. 23.부터라고 주장하는데, 위 목록은 2017. 6.경부터 2023. 6.경까지 원고의 영업이력을 마치 피고들의 상호로 이루어진 것처럼, 혹은 원고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33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21	2018.12.06 "[]" 12.21 공연 [] 백화점은 오는 21일, [] 카드와 손잡고 2030세대 고객들을 위한 []를 연다고 6일 밝 혔다.연 장소도 2030 고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곳 중 하나인 []의 [] [] 카페로 정했다. 출처: []	22	2019-03-30 "[]" [] 코스메틱 브랜드 30일 []에 위치한 []에서 파티를 진행한다.히 스토리 존과 볼링,롤렛 등 게임을 즐길 수 있는플레이존, 다양한 케이터링도 만나볼 수 있다. 가수 [], [] 라 이브의 공연도 함께할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출처: []
23	2019.04.29-[] , 란제리 패션쇼 2019.05.25 언더웨어 전문기업 [] (대표 [])이 란제리 패션 쇼 []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서울 []에서 열린 이 번 패션쇼는 올해 란제리와 스포츠 언더웨어의 트렌드 경 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의 [] 스페셜 에디션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프랑스 브랜드 []의 컬렉션도 선보였다. 출처: []	24	2019-04-01 "[]" []는 최근 서울 성동구 []에서 출시 간담회를 마쳤다. [] 대표는 "[] 는 카메라와 캡코더, 액션캠 아르기까지 전체 영상 솔루션 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사용자들의 다양한 니 즈에 맞춰 영상 솔루션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25	2019.03.28-[] 19.04.05~07(3일간) []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 , [] 에서 "[]"를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 []	26	2019.04.29-[] , 란제리 패션쇼 2019.05.25 언더웨어 전문기업 [] (대표 [])이 란제리 패션 쇼 []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서울 []에서 열린 이 번 패션쇼는 올해 란제리와 스포츠 언더웨어의 트렌드 경 향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의 [] 스페셜 에디션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프랑스 브랜드 []의 컬렉션도 선보였다. 출처: []
27	2019-06-10 [] 컬렉션 론칭 파티 지난 6월 5일, []에서 [] 컬렉션'의 론칭 파티가 열렸다.가장 먼저 시선을 압도한 건 []의 외관을 휘감은 포토월이었다. 배우 [] 을 비롯해, 가수 [] , 대표 [] , 뮤지션 [] , [] , 모델 [] , 아티스 트 [] , 그리고 글로벌 인플루언서 [] []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28	2019.06.28-네이버, '[]' 공연 온라인 생중계 (28~29 2일간) 네이버는 28~29일 이틀간 서울 []에서 [] 팝업 스테이지를 열고, 네이버 브이라이브(VLIVE) 로 온라인 생중계한다.양일간의 공연은 1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 3일만에 공연 티켓이 매진됐다.
29	2019.07.10-[] 그의 새로운 옷이 서울에 왔다. 지난 5월 22일, 서울 [] 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 가장 쿨한 브 랜드로 꼽히는 []의 [] 첫 컬렉션을 전 시했다.	30	2019.07.15 -사진전 [] 개최 []은 18일 오후 서울 []에서 멤버 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 []>을 진행한 다.< []>은 []의 가장 최근 월드투어인< [] []> 시기에 멤버들간의 매우 심도 있 고 친밀한 찰나를 담아낸 전시다. 출처: []
31	2019.07.31 -네이버 '[]' (19.07.28~29 이틀간)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서울 [] []에 서 개최된 '[]'를 계기로, 네이버의 음악, 전시 프 로젝트가 창작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틀 간 진행된 공연에 1000여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으며, VLIVE 생중계 좋아요는 9만 회를 넘겼다. 출처: []	32	2019.09.23 "[]" [] 주관 []가 서울 성동구 [] 소재 []에 서 참가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 [] 러닝크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 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33	2019.10.01- " " (27~29 3일간) (대표)가 글로벌 과의 협업 기념 팝업스토어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27일부터 29일, 에서 진행	34	2019-10-31- " "(24~26/3일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하 콘진원)과 연합회(회장)가 주관 패션코드 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간 및 에서 109개 국내외 디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진행됐다. 패션과 영화의 콜라보를 주제로 한 컨셉 패션쇼를 비롯해 수주회, 네트워킹 행사 등 현장에는 국내외 바이어 및 패션 관계자 8천여 명이 발걸음을 하며 성황을 이뤘다.
35	2020-04-03- " " 행사 행사가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180억 원으로 전년 1547억 원 대비 약 40.8%나 늘어났다. 또 당기순이익은 1423억 원으로 2018년 1391억 원 대비 2.3%가량 상승했다.	36	2020-07-05- " " 가 2일 서울 에서 진행한 출시 기념 체험 행사에서 디자인 팀장이 재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에서 출시기념 체험 행사를 열고 보다 구체적인 제품 알리기에 나섰다. 출처: "
37	2021.02.21 - "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가 21일 당심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오후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다. 출처: "	38	21.10.30- " " 주관 감각적 아트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브랜드 는 세 번째 핸드크림 출시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 전시를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 출처: "
39	2022.03.14- "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아시아 최대 패션문화마켓 을 15일부터 17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션코드 참가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케이스도 에서 개최된다.	40	2022-09-21- " " 글로벌 기술기업 이 21일 오늘, 서울 에서 5세대 하이퍼디미엄 모터가 탑재된 새로운 무선 청소기, 를 공개했다. 는 이전 세대에서 업그레이드가 아닌 5년에 걸쳐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모터가 탑재되며~ 출처: "
41	2022-11-11- " "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가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에서 진행한 20주년 쇼케이스에 5800여명이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42	2022.12.23 - " " 사" 기자/ 가 런칭 20주년을 맞아 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 모델 등이 참석했으며 브랜드 포토부스, 한정 기프트, DJ파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졌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03

43 2023.02.24-“ [] ” [] 관계자는 “이번 [] 행사에서 [] 이 수입하는 다양한 내추럴 와인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 를 시작으로 내추럴 와인 카테고리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내추럴 와인 페어 [] 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 방한 및 국내외업체가 참여하며, 25일 [] [] 및 26일 부산 영도의 [] 에서 진행된다.	44 2023.04.03-“ [] 팝업” [] 의 디자인 정체성 [] ‘[]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에 따라 스포츠 세단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전 트림에 기본 탑재하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능을 갖춘 편의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아울러 오는 26일까지 서울 성동구 [] 스튜디오 ‘[] ’에서 [] 의 디자인 요소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전시전 “ [] ”가 열린다.
45 2023.06.05-“ [] 데이” [] 그룹의 싱글 몰트 [] 브랜드 [] 이 국내 성장세에 힘입어 6/17(토), 국내 최초 “ []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많은 위스키 팬들이 기대하는 첫 국내 행사는 [] 웹사이트에서 [] 에 가입한 [] 멤버들 중 추천을 통해 초청되며, [] 는 [] 멤버 인증을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데일리샷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 데이 행사는 6월 17일 [] [] 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별지6

각하하는 부분

1. 청구취지 제2항의 별지1, 2 기재 각 표장의 사용 금지청구 중 '이에 준하는 홍보물', '이에 준하는 서류', '이에 준하는 표지물', '인터넷 게시물' 부분
2. 청구취지 제3항의 별지3 기재 각 사진의 사용 금지청구
3. 청구취지 제4항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별지3 기재 사진의 사용 금지 및 제3자로 하여금 표장·사진 파일, 게시물, 이미지·캡처 등 자료 제공·게시 승인 요청 등의 관여 금지청구 부분
4. 청구취지 제5항의 별지1, 2 기재 각 표장 및 별지3 기재 사진을 이용한 오인·혼동 가능 표시, 광고 금지청구
5. 청구취지 제6항의 별지4, 5 기재 영업연혁 및 성과를 이용한 표시·광고·게시 금지청구
6. 청구취지 제7항의 별지4, 5 기재 내용의 삭제 및 재차 표시·광고·게시 금지청구